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박성훈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(안 제8조제7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